

환경부고시 제2013-113호
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(환경부고시 제2012-119호, 2012.7.9)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고시합니다.

2013년 9월 12일

환 경 부 장 관

##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

### 1. 개정 이유

QA/QC(정도보증/정도관리)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측정방법·정량한계 개정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함

### 2. 주요 내용

가. 토양시료 분석기기, 시료의 검증방법 및 정량한계 재설정

- 활용빈도 및 조사결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‘불소 및 시안 이온 전극법’을 폐지함
- 정도관리의 적정수행을 위해 표준용액을 첨가한 시약바탕시료(reagent blank)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구리 등 11개 항목의 정량한계를 재설정함

나. 금속류-유도결합플라즈마-원자발광분광법(ICP-AES)의 발광강도 측정기준 확대

- 구리, 납 등 측정물질의 발광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물질의 제거를 위해 측정기준(과장)을 2개에서 3개 이상으로 확대함

#### 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